
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2016. 1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목 차

제1편 기업옴부즈만 운영 현황

개요 / 연도별 · 분야별 처리 실적 / 수록 목록

제2편 기업고충민원 해결 주요 사례

| | |
|-------------------------------------|----|
| I. 행정 · 문화 · 교육 분야 | 5 |
| 1. 관급자재 대금 미지급 이의 | 6 |
| 2.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이의 | 8 |
| 3.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변경 승인 요구 | 10 |
| 4. 하도급 제한의무 위반 제재 이의 | 12 |
| 5. 보건소 진료의약품 관련 부당한 납품요구 이의 | 14 |
| 6. 교육청 발주공사 자재 대금 지급 요청 | 16 |
| II. 국방 · 보훈 분야 | 18 |
| 1.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요청 거부 이의 | 19 |
| 2. 저고도레이더 양산 3호기 납품절차 진행거부 이의 | 21 |
| 3. 함정건조 실투입 노무공수 부당삭감 이의 | 23 |
| 4. 위법·부당한 계약금액 감액 결정 취소 요구 | 25 |
| 5. 군납 고춧가루 계약 이행 점검결과 이의 | 27 |
| 6. 방산원가자료 성실제출업체 지정 취소 이의 | 29 |
| III. 복지 · 노동 분야 | 31 |
| 1. 송금 오류로 인한 공사대금 반환 요청 | 32 |
|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회수 이의 | 34 |

| | |
|--|----|
| IV. 재정·세무 분야 | 37 |
| 1. 국유재산 사용허가 | 38 |
| 2. 골프장 사업부지 내 용도폐지된 국유지 무상양여 요청 | 40 |
| 3. 법인세 경정 요청 | 44 |
| 4.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 46 |
| 5. 표준재무제표 변경 등록 요청 | 49 |
| 6. 대기업 부도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과세 도움 요청 | 51 |
| 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청 | 54 |
| 8. 법인세 환급 요청 | 57 |
| 9. 기납부한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 요청 | 59 |
| 10. 공공기관 물품 납품대금 지급 요청 | 63 |
| | |
| V. 산업·농림·환경 분야 | 65 |
| 1. 도로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 요구 | 66 |
| 2. 분양대금 연체료 감면 요청 | 68 |
| 3.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요청 | 70 |
| 4. 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 요청 | 72 |
| 5.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요청 | 74 |
| 6. 구거부지 매수가격 이의 | 77 |

| | |
|---------------------------------------|------------|
| 7. 공장등록 요청 | 79 |
| 8. 광해방지 시설 피해 보상 요구 | 81 |
| 9. 상가 앞 설치 울타리 출입문 설치 요청 | 83 |
| 10. 어획증명서 발급 지연 개선 요청 | 85 |
| VI. 주택·건축 분야 | 87 |
| 1. 건축허가서 미교부 이의 | 88 |
| 2. 건축법상 접도(接道) 요건 충족 건축허가 불허 이의 | 90 |
| 3.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 요청 | 92 |
| VII. 도시·수자원 분야 | 94 |
| 1. 택지개발로 단절된 진출입로 및 오수관로 연결 요구 | 95 |
| 2.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요구 등 | 97 |
| 3.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검토 요구 | 99 |
| 4. 공사비 부담환수 등 이의 | 101 |
| 5. 택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설계변경 요청 | 103 |
| 6.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강제 임대료 추가 요구 | 105 |
| VIII. 교통·도로 분야 | 107 |
| 1. 좌회전 허용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구 | 108 |
| 2.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개설 요구 | 111 |
| 3. 레미콘공장 진출입로 개설 요구 | 113 |

제1편 기업옴부즈만 운영 현황

I 기업옴부즈만 개요

□ 기업옴부즈만 목적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적인 기업 지원 분위기에 발맞추어 기업고충·애로의 실질적인 해소를 위하여 2009년 기업옴부즈만을 도입

□ 기업옴부즈만 근거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호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 기업옴부즈만 활동 경과

-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영세상공인·중소기업인 전문 방문상담 창구신설
- 국민신문고에 기업민원 인터넷 접수 창구를 개설
 - 기업 고충민원 내부발굴회의 활성화 (월 1회)
-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인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통하여 기업 현장속으로 찾아가 기업의 고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 노력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간담회 개최 (월 1회)

□ 기업옴부즈만 향후 계획

- 기업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 및 약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운영 확대
- 경제적 약자인 영세 상공인·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 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

II 연도별 처리 실적

| 구분 | 계 | 시정 권고 | 의견 표명 | 조정 합의 | 심의 안내 | 기각 각하 | 이송 이첩 | 안내 회신 | 종결 | 취하 |
|----------|-----|----------|----------|----------|----------|----------|----------|----------|----|----|
| 계 | 490 | 27 | 24 | 140 | 24 | 37 | 0 | 155 | 17 | 75 |
| 2015. | 238 | 9 | 14 | 59 | 9 | 15 | 0 | 73 | 16 | 42 |
| 2016.11. | 252 | 18 | 10 | 81 | 15 | 12 | 0 | 82 | 1 | 33 |

III 분야별 처리 실적

| 구분 | 계 | 심의대상 민원 | | | | | | 단순 안내민원 | | |
|--------|-----|----------|----------|----------|----------|----------|----------|----------|----|----|
| | | 시정 권고 | 의견 표명 | 조정 합의 | 심의 안내 | 기각 각하 | 이송 이첩 | 안내 회신 | 종결 | 취하 |
| 계 | 490 | 27 | 24 | 140 | 24 | 37 | 0 | 155 | 17 | 75 |
| 행정문화교육 | 63 | 2 | 1 | 19 | 3 | 4 | 0 | 16 | 8 | 10 |
| 국방보훈 | 59 | 5 | 8 | 13 | 1 | 3 | 0 | 25 | 0 | 4 |
| 경찰 | 8 | 0 | 0 | 2 | 1 | 0 | 0 | 3 | 1 | 1 |
| 복지노동 | 45 | 2 | 1 | 13 | 3 | 2 | 0 | 18 | 2 | 4 |
| 재정세무 | 77 | 3 | 1 | 11 | 1 | 3 | 0 | 41 | 0 | 16 |
| 산업농림환경 | 145 | 11 | 10 | 52 | 6 | 9 | 0 | 32 | 3 | 22 |
| 주택건축 | 28 | 2 | 1 | 11 | 1 | 2 | 0 | 7 | 0 | 4 |
| 도시수자원 | 37 | 2 | 1 | 9 | 3 | 3 | 0 | 8 | 3 | 8 |
| 교통도로 | 28 | 0 | 1 | 10 | 5 | 1 | 0 | 5 | 0 | 6 |

IV

분야별 수록 목록

| 분 야 | | 제 목 | 결 정 | |
|------------|----------------------------|----------------------------|--------------------------------|------|
| 계 46 건 | | | | |
| 행정문화 교육 | 6 | 자치행정 | 관급자재 대금 미지급 이의 | 합의해결 |
| | 지방재정 |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이의 | 합의해결 |
| | | |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변경 승인 요구 | 시정권고 |
| | | | 하도급 제한의무 위반 제재 이의 | 의견표명 |
| | | | 보건소 진료의약품 관련 부당한 납품요구 이의 | 합의해결 |
| 학교관리 | 교육청 발주 공사 자재 대금 지급 요청 | 합의해결 | | |
| 국방보훈 | 6 | 국방 입찰 |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요청 거부 이의 | 시정권고 |
| | 저고도레이더 양산 3호기 납품절차 진행거부 이의 | | 의견표명 | |
| | 함정건조 실투입 노무공수 부당 삭감 이의 | | 시정권고 | |
| | 위법부당한 계약금액 감액 결정 취소 요구 | | 시정권고 | |
| | 군납 고춧가루 계약이행 점검결과 이의 | | 의견표명 | |
| | 방산원가자료 성실제출업체 지정취소 이의 | | 의견표명 | |
| 복지노동 | 2 | 건강보험 | 송금 오류로 인한 공사대금 반환 요청 | 합의해결 |
| | 고용보험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회수 이의 | 시정권고 | |
| 재정세무 | 10 | 국유재산 | 국유재산 사용허가 요청 | 합의해결 |
| | | | 골프장 사업부지내 용도폐지된 국유지 무상양여 요청 | 합의해결 |
| | 국세 | | 법인세 경정 요청 | 합의해결 |
| | | |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 시정권고 |
| | | | 표준재무제표 변경등록 요청 | 합의해결 |
| | | | 대기업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 어려움으로 과세 도움 요청 | 합의해결 |
| | |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요청 | 합의해결 |
| | | | 법인세 환급 요청 | 합의해결 |
| | 지방세 | 기납부한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 요청 | 합의해결 | |
| | 공정거래 | 공공기관 물품 납품대금 지급 요청 | 합의해결 | |

| 분 야 | | 제 목 | 결 정 | |
|------------|------|--------------------------|-----------------------------|------|
| 산업농림 환경 | 10 | 도로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 요청 | 조정해결 | |
| | | 분양대금 연체료 감면 요청 | 시정권고 | |
| | |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요청 | 시정권고 | |
| | | 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 요청 | 조정해결 | |
| | |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요청 | 의견표명 | |
| | | 구거부지 매수가격 이의 | 시정권고 | |
| | | 공장 등록 요청 | 합의해결 | |
| | 광업행정 | 광해방지시설 피해보상 요구 | 조정해결 | |
| | 해양수산 | 상가 앞 울타리 출입문 설치 요청 | 합의해결 | |
| | | 어획증명서 발급 지연 개선 요청 | 합의해결 | |
| 주택건축 | 3 | 건축허가 | 건축허가서 미교부 이의 | 시정권고 |
| | | 건축허가 불허 이의 | 합의해결 | |
| | 건축행정 |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 요청 | 의견표명 | |
| 도시 수자원 | 6 | 도시계획 | 택지개발로 단절된 진출입로 및 우수관로 연결 요구 | 조정해결 |
| | | |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요구 등 | 합의해결 |
| | | |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검토 요구 | 합의해결 |
| | 도시기타 | 공사비 부담환수 등 이의 | 시정권고 | |
| | | 택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 공사 설계변경 요청 | 합의해결 | |
| | 하천관리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강재 임대료 추가 요구 | 합의해결 | |
| 교통도로 | 3 | 도로행정 | 좌회전 허용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구 | 조정해결 |
| | | |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 개설 요구 | 합의해결 |
| | | | 레미콘 공장 진출입로 개설 요구 | 의견표명 |

< 고충민원의 결정 내용 >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합의해결 :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 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
- 조정해결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

제2편 기업고충민원 해결 주요 사례

I. 행정·문화·교육 분야

1. 관급자재 대금 미지급 이의
2.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이의
3.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변경 승인 요구
4. 하도급 제한의무 위반 제재 이의
5. 보건소 진료의약품 관련 부당한 납품요구 이의
6. 교육청 발주공사 자재 대금 지급 요청

관급자재 대금 미지급 이의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피신청인이 추진한 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1공구에 관급자재 (이형철근)를 차질 없이 납품하였음에도 납품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조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관급자재의 경우 계약된 범위 내에서 발주처나 감리단의 요청에 따라 반입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신청인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공사 준공까지 공식적인 계약변경이 없었으므로 당초 관급자재 계약된 수량에 대한 비용 외에 추가 및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대금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나, 신청인이 절차를 누락하게 된 과정에 피신청인의 귀책이 있었다면 신청인이 절차 누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판단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55~160조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해결 과정 및 내용

-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에게 본 민원 관련 관급자재 납품 경위 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자재가 납품되었거나, 납품된 자재에 하자가 있는 등의 문제가 없었고, 단지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의 누락으로 인해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신청인에게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합의 권고
-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권고내용 등을 검토하여 합의권고 내용을 수용하고, 2016. 10. 20.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우리 위원회에 회신
- 피신청인이 중요한 행정절차의 누락으로 신청인만이 모든 책임과 손해를 떠안는 결과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인을 배려한 적극적인 조치 (대금지급)를 취함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로 인한 피해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급하여 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후에 하자를 치유할 필요가 있음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이의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2016. 3. 피신청인이 시행한 한강 자전거 대여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통해 한강공원(OO지역) 자전거대여점 8개소(3,807㎡)에 대한 공유(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2016. 4. 23.부터 2018. 4. 22. 까지 2년간 사용료 14억 2110만원에 받았다.
- 그런데 사업운영 중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전에 해지를 요청하고 2016. 7. 22. 사업을 임의로 종료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6. 8. 31. 이 민원 사용·수익허가를 사업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신청인이 운영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부과 등을 예고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사용수익허가 허가조건(OO지역) 제19조(사업 허가의 취소) 제3항에 따라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분납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경우와의 형평상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신청인이 사용·수익하지 않은 기간의 공유(행정)재산 사용료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제1항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5. 9.) 제9조(계약보증금)

해결 과정 및 내용

-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용·수익허가를 2016. 8. 31. 취소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점, 설령, 이 민원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민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이후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합의 권고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OO지역) 운영을 중단하여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중단 후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걱정하지 않으므로 행정자치부 질의결과와 우리 위원회 권고내용 등을 검토하여 합의권고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위원회에 회신

시사점 및 기대효과

- 피신청인이 공유(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시 법령과 사용수익허가조건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함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변경 승인 요구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시 △△면 일대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아스콘 포장과 관련하여 현장상태가 당초 설계서와는 달라 추가 인력 및 장비 등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바, 설계변경을 승인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공사 아스콘 표층작업 적용구간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당초 설계내역과 공사 현장상태의 불일치에 대한 것으로, 착공내역 산출 기초자료의 단순 단가변경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

쟁점사항 및 관련 법령

- 당초 설계서가 이 민원 공사현장과 불일치하는 지 여부 및 기타 인건비, 공사장비 등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1-가항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 공사 설계서(포장계획평면도)에는 마을 골목길에 대한 경사도, 도로 폭 등 현장 상태에 대한 상세한 표시가 없고, 불연속구간을 반영하지 않는 등 공사현장과 불일치하고 있어 현장상태에 맞는 설계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 관련 법령을 근거로, 피신청인의 설계변경 불승인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권고를 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해결함

시사점 및 기대효과

- 당초 설계서와 공사현장이 불일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함에도 단순히 단가변경이라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불허하고 있는 관급(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 권고하여 해결한 모범사례임
- 관급공사 계약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 비용을 줄이고, 비정상적인 계약불공정 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하도급 제한의무 위반 제재 이의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시설물관리공단이 발주한 ‘△△ 공영주차장 구조체 보강 공사’를 낙찰받아 적격심사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발주처로부터 특허공법부분에 대해 하도급승낙서 및 적정성 검토 승인 공문을 받아 이 민원 공사를 준공하였는데, ○○시는 신청인이 특허공법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 하도급 제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바, 부당하니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시설물관리공단의 서면승낙 등을 받았고 공사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고의성은 없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일괄하도급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타당함

쟁점사항 및 관련 법령

-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 여부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해결 과정 및 내용

- ◇◇ 시설물관리공단은 신청인의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하도급 승인한다.'는 취지의 공문과 함께 '하도급의 범위' 등의 검토 결과서를 통보하는 등 성능개선공종 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승낙한 것은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고, 발주처의 승인을 신뢰하고, 그러한 신청인의 신뢰에 귀책사유 또한 발견하기 어려우며 전체 공사를 완료한 점,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죄가 안 됨'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해결함

시사점 및 기대효과

- 당초 특허부분의 하도급 공정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신뢰하고 하도급 공사 및 전체 공사를 완료하였고, '죄가 안 됨' 불기소 처분에도 해당 기업에게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시정 권고하여 해결한 모범사례
- 관급공사의 하도급 금지와 관련하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 비용을 줄이고, 신뢰보호 및 고충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보건소 진료의약품 관련 부당한 납품요구 이의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사가 발주한 '2016 보건소 진료의약품 단가 구입' 과 관련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등이상의 품목이 아닌 '△△정' 등 특정제약사의 특정약품을 요구하고 있고, 특정 제약사가 아닌 ◆◆약품 등 지역 총판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한편, 신청인은 낙찰 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제약사 선정은 의사 처방권과 관련된 것이고, 공중보건의들의 요청에 의해 특정 제약사 약품에 대해 납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함

쟁점사항 및 관련 법령

- 보건소 의약품 납품 관련 독점 판매 구조의 불공정 여부 및 처방권과 계약관계 법령과의 충돌 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7호 계약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해결 과정 및 내용

-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건소 진료의약품 납품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등 이상의 약품이 아닌 △△정 등 특정제약사의 약품을 요구하고 있어,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등 계약관계 법령에 반하는 점, 지역 총판업체는 이 민원 △△정 등 특정 약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신청인의 영업상 손실을 초래하는 점, 국립의료원 및 주요 대학병원과 달리 이 민원 약품의 경우 비상장의 인지도가 낮은 제품으로서 취급하지 않고 있는바, 공중보건의 및 피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점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건소진료의약품 납품과 관련하여 기존의 특정 제약사의 특정약품을 요구하는 발주 내용을 취소하고, 해당 약품의 성분 및 함량을 기준으로, 재발주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양질의 동등 이상의 효능이 있는 진료의약품이 낙찰가액 범위 내에서 적시에 납품되도록 합의 권고 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합의 해결함

시사점 및 기대효과

- 보건소 진료의약품 납품과 관련하여 경쟁 입찰의 취지와 달리, 특정 제약사의 특정 약품을 납품을 요구하는 등 독점 판매 및 불공정 의약품 납품 구조로 인한 계약상대자인 신청인의 손실 예방과 계약불공정 고충민원을 해소한 모범사례
- 전국 보건소 의약품 납품 관련 유사 고충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교육청 발주공사 자재 대금 지급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충청남도 OO시 소재 OO초등학교 이전공사의 하도급회사인 OO건설(주)에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자재비중 40백 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해결하여 달라는 요청

피신청인 의견

- 원도급회사인 OO종합건설(주)는 하도급회사인 OO건설(주)에 계약금액 737백만원을 전액 지급 완료하였고, 관련 법령상 하도급 회사에 자재를 공급한 신청인에게 원도급회사에서 보전토록 요구할 근거가 없음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신청인과 하도급회사인 OO건설(주)간의 자재 납품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사인간의 계약에 해당하여 발주기관인 피신청인이 법령상으로는 관여하기 곤란

해결 과정 및 내용

-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원도급자, 하도급자, 신청인간 해결방안을 모색할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도급자 등 관련 업체들간의 협의 회의를 통해 자재·장비임차료 등 총미지급금의 6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정산함

시사점 및 기대효과

- 민원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인간의 계약 관계이나, 발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임

II. 국방 · 보존 분야

1.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요청 거부 이의
2. 저고도레이더 양산 3호기 납품절차 진행거부 이의
3. 함정건조 실투입 노무공수 부당삭감 이의
4. 위법·부당한 계약금액 조정(감액)결정 취소 요구
5. 군납 고춧가루 계약 이행 점검결과 이의
6. 방산원가자료 성실제출업체 지정취소 이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요청 거부 이의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국군○○관리단과 전원변환기 DC24V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시제품을 생산하였는바, 이 장비를 시험검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의 내부 사정으로 검사가 지연되어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시험·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지연사항은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이 민원 계약의 기간연장은 불가하다.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계약 이행의 지체사유가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험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생되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계약기간 연장요청 거부처분의 위법·부당한지 여부

해결 과정 및 내용

- 피신청인에게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하여 계약을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기업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납품이 지체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납품 기한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에 부당하게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

저고도레이더 양산 3호기 납품절차 진행거부 이의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피신청인의 사전 승인 및 동의하에 저고도레이더 양산품을 일부 개조하여 항공관제레이더(ASR)의 시험평가 대상장비로 활용되었다는 이유로 저고도레이더 양산품에 대한 납품절차 진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민원 장비는 시험평가에 사용된 중고품이 명백하므로 정부 검사를 진행하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저고도레이더 양산품을 항공관제레이더(ASR) 시험평가 대상장비로 활용하기로 사전 협의되었는지 여부
- 저고도레이더 양산품이 '신품'이 아닌 '중고품'인지 여부
- 저고도레이더 양산품의 성능보장 대책이 있는지 여부

해결 과정 및 내용

- 피신청인에게 성능보장 추가 대책을 강구한 후 중지된 납품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
- 피신청인에게 국방예산 절감을 위해 항공관제레이더(ASR) 구매사업의 경우처럼 기존 연구개발실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시사점 및 기대효과

- 납품진행절차 재개 및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 및 국방예산 손실 방지

함정건조 실투입 노무공수 부당삭감 이의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일일 작업 전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실 투입 후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연도별 계상(計上)된 노무공수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 투입된 노무공수를 검증없이 삭감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피신청인은 매월 사업성과관리시스템에 따라 인정범위 내에서 계획된 노무공수를 승인하였고, 매주 1~2회 현장검증을 통해 노무공수를 입력하고 승인하였으며, 주간 단위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다. 다만, 매일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일부 사업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성과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노무공수 투입실적을 확인하고 있다.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무공수 투입계획을 사전 승인하고, 실 투입된 노무공수를 확인·검증없이 삭감하였는지 여부
- 관련 법령과 규정 및 이 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실 발생(투입) 노무공수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노무공수 승인 및 인정 등 현장감독 업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

해결 과정 및 내용

-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행한 '노무공수 삭감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검증하여 실제 투입된 노무공수를 인정해 정산하고,
- 향후 공수관리시스템의 일일 작업계획의 사전 검토와 현장감독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노무공수 투입여부 승인 및 정산할 것을 시정권고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실제 투입된 노무공수에 대한 부당한 삭감 방지

위법·부당한 계약금액 감액 결정 취소 요구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2009. 12. 29. 피신청인과 방산물자인 ‘차기○○○구조함의 추진기 및 축계’의 납품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부가세(약 8.9억 원)상당 금액 만큼을 감액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피신청인 의견

- 신청인이 이 민원 장비에 대한 제안가격 제출 시 방산물자로 지정되기 이전이므로 제안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이 민원 장비가 계약체결 이전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부가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 장비의 계약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체결한 이 민원 장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만큼 계약금액 조정(감액)한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

군납 고춧가루 계약 이행 점검결과 이의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군납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지역농협에서 건조된 고추를 구매해야 하는데 건조기가 없는 영세농민들의 홍고추를 구매해 농협 건조기를 이용해 건고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방사청에서 품질하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구제해 달라는 요청

피신청인 의견

- 하자란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계약업체 잘못에 의한 제품의 결함인바, 홍고추 구매 후 건조사용은 품질하자에 해당한다는 입장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건고추 구매 후 생산된 고춧가루와 홍고추 구매 후 건조 사용한 고춧가루의 품질 차이 파악
 - 「국가계약법」 제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제55조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에 대하여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공인시험기관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아 고춧가루 제품 자체의 품질에 흠결이나 결함이 없고, 지역농협은 홍고추 생산시기(51일) 중 약 31일 비가 내렸고, 이에 소량 생산농가의 요구로 선의의 목적으로 상등급 이상의 홍고추를 구매하여 건조(화건)과정을 대신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하자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시정권고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군부대 농산물 납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협이 부정당업체가 되는 것을 예방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납품과 영세한 농민들이 계속적으로 고추농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례

방산원가자료 성실제출업체 지정취소 이의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주요 방위산업체의 대표들인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인증 부여 또는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원가부정행위와 무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과징금 부과를 인증취소 사유로 적용하려고 하는 바, 원가자료와 무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요청

피신청인 의견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 민원조항을 업체가 인지하고 인증을 받았으므로 그 신뢰에 따라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개정관련 소급효 인정여부
 - 「방위사업법」 제46조, ‘방산원가 규칙’ 제1조, 제26조, ‘방산원가 세칙’ 제32조의3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에 대하여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원가 부정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이 민원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최초 성실업체 지정 이후 지급받은 모든 가산금을 소급하여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시사점 및 기대효과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방산업체들이 방산원가와 무관한 사유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받은 가산금을 소급하여 환수되지 않도록 도와준 사례

Ⅲ. 복지 · 노동 분야 📌

1. 송금 오류로 인한 공사대금 반환 요청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회수 이의

송금 오류로 인한 공사대금 반환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회사 크레인 공사대금 583만원을 인터넷으로 송금하였는데, 입금 이후에 정당업체(○○)가 아닌 예전에 거래하였던 다른 업체(◇◇)에 잘못 입금한 것을 확인되어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잘못 입금한 통장계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체납사업자 ◇◇, 2016. 5. 16) 되어 반환 받을 수 없다고 하는바, 반환 조치해 달라고 요청

피신청인 의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체납사업장(◇◇), 착오 송금인 ●●산업,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 모두가 오류, 착오 입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압류예금 계좌에서 오입금 금원에 한해 인출 동의를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되었을 시 반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볼 때 수취인(체납사업장)의 예금압류 처분은 유효하나, 국민편익 측면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압류예금 계좌에서 오입금 금원에 한해 인출 동의를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었을 시 반환조치 가능할 것이라고 파악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에 대하여 체납사업장(◇◇), 금융기관(●●은행)으로부터 오류 착오 입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은행)으로부터 압류예금 계좌에서 오입금 금원에 한해 인출동의요청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에서 착오 송금액에 대한 인출 동의를 하여 ●●산업에 공사대금을 반환조치 해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해결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관련기관 및 신청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환원을 함으로서 기업의 편익증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회수 이의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피신청인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금을 신청하여 연구개발자 2명을 승인 받은 후 노△△를 채용하였으나 6개월 만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함에 따라 대체자로 박○○을 채용하였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8개월 만에 권고사직 하였다.
- 전임자 노00이 6개월을 근무하였고 대체자 박00이 잔여기간 6개월을 초과한 8개월을 근무하여 12개월 고용의무를 지켰는데도 피신청인은 대체자 박○○이 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 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박○○에게 지원된 급여보조금 5,400,000원을 회수하겠다는 예정통보를 하였는바,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원 대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를 최소한 일정기간 감원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은 전임자 '노△△'뿐 아니라 대체자 '박○○'에 대한 감원방지기간(2015. 1. 30. ~ 2016. 4. 29.)에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지원 대상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말았어야 하므로 감원방지

기간에 고용 조정된 박○○에게 지급된 지원금 5,400,000원을 회수하는 것은 타당하다.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전임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여 대체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 전임자 노△△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고 대체자 박○○이 8개월 이상을 근무하였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원금 지급 내역에도 전임자·대체자로 표현되어 전임자 노△△와 대체자 박○○에 대한 지원금을 각각 6개월씩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대체자 박○○이 6개월 이상을 근무하여 결과적으로 12개월 고용의무를 지켰다고 볼 수 있으며
 -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임자 노△△가 개인사정으로 6개월 만에 퇴사함에 따라 부득이 박○○을 대체자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박○○에 대한 권고사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 지원금의 지급 목적이 제재가 아닌 사용자의 고용의욕을 고취시켜 근로자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금 회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고용의욕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당한 행정행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원금 회수 예정 통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다.
- 「고용보험법」 제20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 지침」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에 대하여 관련 자료 검토 및 피신청인과 수차례 통화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시정권고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금 환수 관련 규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중소기업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계기 마련

IV. 재정 · 세무 분야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요청
2. 골프장 사업부지 내 용도폐지된 국유지 무상양여 요청
3. 법인세 경정 요청
4.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5. 표준재무제표 변경 등록 요청
6. 대기업 부도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과세 도움 요청
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청
8. 법인세 환급 요청
9. 기납부한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 요청
10. 공공기관 물품 납품대금 지급 요청

국유재산 사용허가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토지의 전 소유주 명의로 상가 건물을 신축하다가 미완공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건축주를 신청인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완공하려고 한다.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민원 국유지를 통로로 활용해야 하니 건물이 완공 될 때까지만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

피신청인 의견

- 국유지상에 건축허가 등을 위한 도로(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향후 그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 목적에 장애가 되므로 신청인의 주장 수용 불가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국유지를 도로(진입로) 목적으로 사용 허가하더라도 국가의 소유권 행사 및 향후 국유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해결 과정 및 내용

- 토지의 전 소유주에게 최초로 국유지 사용을 허가할 당시 장래에 철도로 사용계획이 없으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 연장이 가능함을 기재한 확인서 발급 사실이 있음
- 해당 국유지는 폐선부지로 현재 인접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토지 형태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도로 용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곤란할 것으로 판단
- 국유재산 총괄청에서 진입로 목적의 사용허가·대부를 불허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유재산 활용 차원에서 굳이 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음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사용 신청 허가)하고 향후 매각검토를 거쳐 매각할 수 있도록 합의 권고

시사점 및 기대효과

- 활용 가치가 적은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게 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천하여 고충 민원 해결은 물론 국고 수입 증대에 기여
- 도심 한가운데 흉가처럼 방치되어 있던 상가 건물이 완성됨으로서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

골프장 사업부지 내 용도폐지된 국유지 무상양여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 인가를 받고 ○○시 ◎◎읍 ●●리 일원에 정규 대중골프장 조성 및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사업지역 내에 공공시설인 대체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피신청인1(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4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받았다. 피신청인1은 인가 조건으로 이 민원 시설사업지역 내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공시설 설치를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사업 착공계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착공계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의 개량을 포함하였다. 피신청인1은 2015년 4월 이 민원 시설사업 지역 내 공공시설을 용도 폐지하였고 피신청인2(국유재산 관리)는 용도 폐지된 국유지를 피신청인1로부터 인수하였다. 신청인은 2015년 5월 새로 공공시설(소하천)을 이설 설치하였다. 신청인은 2015년 8월 피신청인2에게 용도 폐지된 국유지를 무상귀속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2는 유상매수를 요구하면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
 -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 4. (생략)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시설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 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36209 판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당시의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구거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고, 이는 그 사업 준공 시점에서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바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무상귀속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그 사업 일정을 맞추고자 원고가 유상매수협의취득 및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취득하였다면, 가사 매매

계약과 토지수용절차에서의 재결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정당한 원인 없이 보상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셈이 된다고 볼 것이다

해결 과정 및 내용

- 신청인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피신청인1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된 점, 대법원은 개발행위 사업시행자가 그 준공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을 유상 취득한 경우 국가는 정당한 원인없이 유상 매각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한 것으로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설치한 공공시설로 인하여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무상양도 협의 및 무상양도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용도폐지한 공공시설은 피신청인2로 인계되었는데,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용도폐지한 공공시설과 신청인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 으로서는 피신청인2와 직접적으로 무상 양도에 대한 협의절차를 이행하기는 어려운 처지로 보여진다. 아울러 피신청인1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기부채납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관리할 것이므로 비록 피신청인1은 이미 용도 폐지하여 관리 전환하였을지라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7호에 따라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중 신청인에게 무상 양도할 대상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1에게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상당하는 비용을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으로 무상 양도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합의권고 하였다.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사업지역 내에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합당한 조건을 검토하여 양여토록 함

법인세 경정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72백만원을 착오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경정청구 기간 경과를 사유로 경정을 거부함

피신청인 의견

- 국세 고지 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신청인이 불복기간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신청인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사유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해결 과정 및 내용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 세액공제액을 착오로 과소 계상하였음이 확인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조세심판 청구시 쟁점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다룰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에게 통보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만으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법인세 경정 내용에 포함된 오류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 신청인의 이월결손금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 규모를 고려할 때, 2016 사업연도까지 쟁점 세액공제액을 공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불가능)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이나 훈령·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과세표준·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시정해오고 있음
-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착오로 누락된 세액 공제액을 반영하여 신청인의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합의 권고

시사점 및 기대효과

- 피신청인의 착오로 인해 신청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로서 법인세 경정(국세 환급)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측면 지원하는 한편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2012. 2. 설립하여 수출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개업 초기 463백만 원의 수출용 압축파지를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가 0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내국신용장 등 적격증빙 미비로 공급자로부터 10%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46백만 원을 부담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

피신청인 의견

-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2012. 2. 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하나로 신설된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는 부칙 규정에 의해 2012. 7. 1.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그 이전에 발급사유가 생겼으므로 적용할 수 없음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10% 세율의 과세거래를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세무서의 경정이 있기 전 까지 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 2. 1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 2. 1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59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 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

해결 과정 및 내용

-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인 사법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는 비록 공급시기가 다르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 한편,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2012. 2. 2.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의 경정이 있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세무서의 현지조사에 의해 경정되기 전에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하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민원 구제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과세당국의 세법 적용 오류 등으로 환급받지 못한 세금 46백여만 원을 환급받게 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

표준재무제표 변경 등록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전력 및 정보통신 설비업체인데, 2015년도 법인세 정기신고 (전자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인해 2015년도 12월 말 기준 연간 표준재무제표가 아닌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시 제출한 6월 말 기준 반기 표준재무제표를 전송, 제출하였는바, 각종 입찰 평가 등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제출이 필수사항이어서 실제 재무제표로 등록이 안 되는 경우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2015년도 말 기준 연간 표준재무제표로 교체 등록해 줄 것을 요구

피신청인 의견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무제표 변경 등록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법인세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련 법인세 수정신고는 가능하나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신청인이 법인세 신고 시 중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과세관청에 등록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해결 과정 및 내용

- 신청인이 법인세 정기신고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의 내용이 중간예납 신고 시 제출한 6월 말 기준 반기 표준재무제표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 주주총회의사록,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 법인의 실제 재무제표는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는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해 반기 재무제표를 잘못 제출한 것이고, 세무서에 등록된 재무제표는 사업상 중요한 증명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재무제표로 변경하여 등록해 줄 것을 합의권고한 결과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변경 등록함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실제 재무제표와 과세관청에 등록된 재무제표가 상이한 문제로 입찰 참가, 사업자금 지원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상 애로 해소

대기업 부도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과세 도움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개인사업자 ○○개발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개발(주)의 대표자인 바, ○○개발은 ●●석산개발에서 골재를 매입하여 ◇◇레미콘에 매출하는 개인사업자이며, ◎◎개발(주)는 ○○개발에서 ◇◇레미콘(주)에 매출하는 골재를 타인 소유의 화물차를 용차하여 골재를 운반하여 주고 ○○개발로부터 운반비를 받고 타인 소유의 화물차의 용차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운송업체임.
- ◇◇사태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를 못 하여 현재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바, 국세채납액에 대해서 채납처분을 유연하게 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채납처분 절차상 국세채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및 압류는 부득이한 절차로 신청인에 대한 채납처분 정당함.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신청인의 개인사업자인 ○○개발이 ●●석산개발에 배서한 ◇◇레미콘 부도어음은 ◇◇레미콘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에 따라 향후 수년 동안 어음금액 전액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므로 ○○개발이 ◇◇레미콘으로부터 골재매출의 대가로 받은 어음(매출대금)은 매입처에 현금과 같이 지급한 것이 되므로 ○○개발은 매출대금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나 소득세법상 대손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그러나 신청인이 대표자인 ◎◎개발(주)는 타인 소유의 화물차에 대한 용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개발(주)가 ○○개발에 공급한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는 받지 못하였음.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규정에 의한 대손 사유에 해당함. 즉 ○○개발은 2014.2월에 폐업하여 “사업의 폐지”요건을 충족하고 ○○개발의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은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및 법인세 대손금 공제 요건에 해당함.

해결 과정 및 내용

- ◎◎개발(주)의 2014년도 중 대손요건이 발생하였으므로 2015.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및 2015.3월 법인세 신고 시 대손금 손금산입할 예정이므로 귀 세무서에서 대손요건에 대한 검토 후 요건에 적합할 경우 ◎◎개발(주)의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을 인용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고,
- 또한, 현재 ◎◎개발(주)는 국세 체납액이 있는 바, ◎◎개발(주)는 매입처에 화물차 용차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매출처인 ○○개발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2015.1월 대손세액 공제 및 2015.3월 대손금 손금산입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환급금이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가급적 2015.3월까지 조세채권 확보가 되어 있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면 ◎◎개발(주)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연하게 해 줄 것을 권고하여,
- 피신청인이 위 권고를 받아들여 미회수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 예정이며 신용정보 미제공 등 유연한 체납처분을 하기로 함

시사점 및 기대효과

- 대기업 등의 부도 및 도산에 따라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등도 경영 구조상 연쇄적으로 자금 경색 등의 애로점을 겪는 상황에 처하여지므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신용정보 제공, 매출채권 압류 등) 유예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조달 및 거래처와의 거래유지 등을 통하여 경영상 자금난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고충민원 신청인은 최첨단 솔루션을 연구개발하여 공급하는 정보기술 벤처기업으로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누락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 3년이 경과하여 고충 신청

피신청인 의견

- ◇◇(주)의 2009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환급고충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및 동법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함이 정당함.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피신청인의 판단과 같이 경정청구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고충민원 신청인은 민원을 신청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하였을 것이다. 우리 위원회 및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고충신청제도는 이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이나 정식 불복제기기간을 놓친 민원인에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 법인세법을 비롯한 각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오류 또는 누락은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액 보다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증액 고지뿐 아니라 감액 환급 경정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 국세기본법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제척기간내)를 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과세관청이 인지하고서도 납세자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전에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 납세자의 경정청구는 법적으로 납세자에게 부여한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을 청구하는 절차일 뿐 그 청구절차가 반드시 과세관청의 감액경정 또는 환급의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 경정청구기한을 수정신고기한(제척기간내) 또는 일반적인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과 형평을 맞추는 취지에서 종전 3년에서 2015. 1. 1.부터 5년으로 개정하였고, 다만 2014. 12. 31.이전 경정청구기한이 3년으로 만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개정된 5년의 기한이 적용되지 않으나,
 - 경정청구기한을 5년으로 개정하기 전에도 국세청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5년과 경정청구기한 3년의 불균형을 자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의 고충제도를 통하여 비록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 만료전에는 납세자에게 고충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바, 이러한 고충신청제도를 법에 반영한 것이 경정청구기한을 5년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즉, 경정청구제도가 납세자에게 법적으로 과세관청의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 제도라면 고충신청제도는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의 오류를 인지한 경우 당연히 직권으로 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과세관청에 알리고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처분 발동을 촉구하는 국세청장 훈령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절차인 것이며, 따라서 국세공무원은 법령 뿐 아니라 국세청장의 훈령 또한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해결 과정 및 내용

- 우리 위원회에서 고충신청인의 고충내용을 검토한 바 그 내용이 타당하고 증빙이 충분(일부 사실 확인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충신청인의 고충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인용할 것을 권고.
-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이 건 고충에 대한 의견이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각하”라는 내용의 단 두 줄로(나머지는 관련 법령을 열거한 것에 불과함) 회신한 것으로 이미 확인되어 추가적인 자료요청에 성실한 회신을 기대할 수 없고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일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에 권고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촉박하므로 피신청인이 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한 직원의 실제 근무여부 및 급여 등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확인하고 다른 요건 및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해 기관의 전산과 자료로 신속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함.
- 피신청인은 위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일부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 후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함.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상 목적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정상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음에도 관련제세에 대한 세무신고시 단순착오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누락하여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과세관청의 법적 청구 기한 도래로 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해결을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 및 불만을 해소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킴.

법인세 환급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2010. 3. 31.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기 매입할인액 734백만 원의 중복 계상으로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되어 법인세 등 148백만 원을 과다납부, 2015. 1. 14. 동일 사안에 대하여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았는바, 피신청인은 2009년 사업연도분은 경정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 거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감안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경정청구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 수용 불가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국세 환급 가능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경정 등의 청구)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청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 부과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라고 회신(국세청 2009. 9. 29. 징세과-110)하였다.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에 대하여 수차례의 유선통화와 합의권고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신청인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기여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는 2014. 12. 31.까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3년간 인정하였으나 2015. 1. 1.부터 5년으로 확대(부칙 규정에 따라 2014. 12. 31.까지 경정청구기간 3년 경과한 것은 종전 규정 적용)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의 오류 등에 대하여 경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과 일치시킴으로써 과거 국가와 납세자간의 형평성이 어긋났던 것을 개선

기납부한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종전 ○○ ◎◎군 소재 토지를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간 이후에 기부채납 예정지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기부채납 예정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요청

피신청인 의견

- 취득 당시 신고납부한 과세권자가 소멸되었다는 점과 사업계획 승인 당시 기부채납 토지가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소멸된 시·군에 대한 지방세환급금 승계 가능 여부와 해당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지방세법」 제9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④ 「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3조(시·군을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군을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군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 소멸 시·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군의 구역에 따라 해당 승계 시·군이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 소멸 시·군의 부과·징수, 그 밖의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는 각각 승계 시·군의 부과·징수 및 그 밖의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멸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 시·군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각각 승계할 그 소멸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해당 승계 시·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멸 시·군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한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시·군이 둘 이상 인 경우에 그 소멸 시·군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승계 시·군이 합의하여 환급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그 승계 시·군의 장 사이에 의견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의 도 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계 시·군이 소멸 시·군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환급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군의 환급·충당의 예에 따른다.

해결 과정 및 내용

- 피신청인에게 지방세환급 및 취득세 비과세 관련 법령이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 요청
 - 피신청인은 검토 결과 취득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소멸된 시·군에 대해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은 징수금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시·군에서 환급하여야 함

공공기관 물품 납품대금 지급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공공기관에 '법무타운과 대규모 도시개발의 기회!'라는 홍보 만화 책자를 50,000부 납품하고 납품대금 1,8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현재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료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법무부, 의왕시, 안양시 등의 법무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협약 지연으로 대금의 지급이 늦어졌음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법무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납품한 홍보 만화 책자에 대한 대금 미지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결 과정 및 내용

- 그동안 피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를 지원하여 왔으며, 법무부, 의왕시, 안양시 등의 법무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협약 지연으로 대금의 지급이 늦어졌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합의 해결되었음

시사점 및 기대효과

- 물품 대금 지연으로 인한 지역 여성 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V. 산업 · 농림 · 환경 분야

1. 도로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 요구
2. 분양대금 연체료 감면 요청
3.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요청
4. 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 요청
5.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요청
6. 구거부지 매수가격 이의
7. 공장 등록 요청
8. 광해방지 시설 피해 보상 요구
9. 상가 앞 설치 울타리 출입문 설치 요청
10. 어획증명서 발급 지연 개선 요청

도로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 요구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주)○○교육이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에 분양받은 부지가 협소하여 계열사간 공동활용이 어려우니 부지 내 도로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해 주거나 인접한 공공지원용지와 교환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시장) 국가산업단지의 공공시설용지인 도로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개의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특히 실 입주기업 대표인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동의 및 국토해양부 고시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주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함
- (○○○○공단) 공공지원용지는 출판단지 부지 분양 전 이미 개발계획 단계부터 입지가 확정되었고, 출판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들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해 선정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도로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부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토할 수 있음.
-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조합은 공공시설인 도로를 폐지하여 산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도시의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공공도로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하여 건축하기 위해서는 변경할 부지의 건축계획(안)에 대해 조합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산업단지 내 도로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필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도별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부

해결 과정 및 내용

-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 12.부터 2016. 1.까지 5차례에 관계기관 현장 회의를 개최하여 합의안을 마련하고 2016. 3. 25. ◎◎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민원 해결

가. 조합은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계획(안)에 대해 조합 건축심의위원회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 제출

나. 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 용도(도로) 폐지 및 변경(산업시설용지) 용역을 하여 그 결과를 파주시에 제출하고, 상하수도관 이설 비용 등 부담

다. ◎◎시장은 용도 변경(도로→산업시설용지) 및 매각 절차 이행 및 지가 상승분을 ○○○에 기부

라. ○○○은 관리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변경 승인 요청 등 제반 행정 절차 이행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공장부지가 도로로 나누어져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었던 것을 관계 기관들의 협조로 통합사옥 건축과 생산설비 배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됨

분양대금 연체료 감면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조성한 ○○연구개발특구내 ◎◎지구 산업시설 용지인 대전 유성구 ○○동 ○○○ 공장용지 5,298㎡ 분양대금을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5차 할부금을 당초 납부기간이 2014. 3. 20.이었으나 2014. 2.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납부를 미루었는데, 피신청인은 2014. 11. 4. 신청인에게 분양대금 5회차 할부금 납부기간이 2014. 9. 20.까지이므로 납기가 지났다고 연체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연체료를 감면해 달라.

※ 신청인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 외 민원 2건 있음

피신청인 의견

- 사업시행기간 변경 및 토지사용시기 지연(6개월)으로 인하여 매매 계약서에 정한바대로 그 지연된 기간만큼 5~6회차 할부금의 납부 약정일을 연장조치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연체이자 감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피신청인은 내부방침으로 가산금 부과를 결정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감액을 주장한다고 하여 수용할 수 없는지 여부

해결 과정 및 내용

- 피신청인이 당초 신청인에게 할부금 납부를 고지한 뒤 할부금을 납부하도록 할 것이라는 선행행위에 반하여, 할부금 납부를 고지하지 않은채 단지 납부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할부금의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통보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납부한 죽동지구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연체료 6,607,770원을 감면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하였음.
-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신청인등에게 감면 조치를 하였음.

시사점 및 기대효과

- 피신청기관들이 민원인과 협의과정에서 수용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담당자가 내부협의과정에서 기존의 약속 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교체가 되어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토록 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임.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1999. 9. 10.부터 그린벨트 지구 내인 ○○ ◎◎시 ●●동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연료절감 첨가제를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 민원 공장일대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이 민원 사업지구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으로 공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어서 대부분 무허가로 공장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피신청인은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2009. 5. 12.)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표시되지 않았고 공장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공장이전대책 부적격 대상자로 선정 통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을 공장이전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

※ 신청인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 외 민원 6건이 있음

피신청인 의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 및 피신청인 내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침」에 따라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 공장이전대책”을 수립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신청인은 공장이전대책기준일(2009. 5. 12.)이전부터 사업장등록증에 제조업이 표시되지 않았고, 공장등록증이 없어 공장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공장이전대책기준일(2009. 5. 12.) 이전부터 제조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해결 과정 및 내용

- 신청인은 이 민원 공장에서 이전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이 민원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였다고 달리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신청인은 이 민원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새롭게 조성한 산업시설용지도 36필지가 미 공급 상태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8조의2에 따라 공장이전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정권고를 하였음.
-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 3명에 대해서는 1차로 우리 위원회 권고대로 수용하고, 의견표명한 2명 및 협조 요청한 2명에 대해서도 2차로 수용하였음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그린벨트 지구내에서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으로 표시하지 않고 제조업을 하던 영세기업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한 사례임.

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면과 ○○면은 인접한 □□시 첨단지구와 동일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접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주민불편이 크므로 첨단지구로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조정해 주고, 향후 직통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환승 등을 통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데도 이를 신설할 경우 준공영제로 인하여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인접 시군에서도 유사민원을 제기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할 수 없다.
- 국토교통부에 조정신청을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주민들의 이용불편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생활환경 변화에 맞추어 버스노선의 변경 및 신설이 필요하다.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관련 기관의 재정부담과 신청인의 편익·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비교를 통한 선택

해결 과정 및 내용

-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 7. 20. 현장 조정(위원장 주재)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원만히 해결
 - 가. △△터미널에서 ○○터미널까지 ○○ 침단지구를 경유하여 운행
 - 나. △△에서 ○○역까지 직통노선이 개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다. 관련기관은 위 사항을 담은 시외버스사업계획변경 인가 및 버스 승강장 표시 등 편의시설 설치
 - 라. ○○ 주민과 △△ 군민이 서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지정학적으로 동일 생활권임에도 직통노선이 없어 생활이 불편하였던 것에 대하여 단계별 노선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 및 상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됨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이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 중, 민원이 제기되어 측량 결과 건축물 대장과 상이하게 제조설비가 하천부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하천부지내 불법건축물설치를 이유로 진입도로로 사용하던 하천부지의 일부(127m²)에 대하여 대부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없어 건축을 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공장 가동을 위하여 공장 및 제조설비를 신청인 소유 부지로 이전하고 하천부지 등에 불법설치된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겠으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민원 하천부지 일부(127m²)에 대하여 점·사용허가를 해주고 공장이전시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

피신청인 의견

- 무단 점·사용 중인 하천 및 공유수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촉구할 것이며 명령 이행 시까지 하천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불법건축물 건립 및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하여 제보 및 고발로 수차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신청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된 이행 강제금을 납부 후 개별법에 따라 수용 등 요구사항을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94호, 2014.5.28.)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이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하천법」(법률 제12994호, 2015.1.6. 개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신청인이 과거에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아 적법하게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하천부지 등에 불법건축된 건축물이 민원 공장부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점·사용허가 및 철거 등 행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해주더라도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장이전 공사후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겠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견표명 하였음.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이 민원 공장은 신청인 등 45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시 관내 지역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는바, 어려운 여건의 당해 중소기업은 물론 종업원의 고용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민원 공장의 계속 가동이 필요해 보임에 따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사례임.

구거부지 매수가격 이의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들은 ○○ ◎◎군 ●●면 ◎◎리 251-5 일원에서 공장을 운영 중 사업확장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같은 리 245 외 3필지 증설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피신청인 소유 구거 938㎡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구거를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국유재산법」에 교환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체구거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이 민원 구거는 용도폐지한 후 매입하라고 하는데 용도폐지된 구거의 지목이 이미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감정평가시 주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10배 이상 상승된 가격으로 매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기부채납한 대체구거와 이 민원 구거를 교환 등을 통해 매수가격을 시정해 달라는 요청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구거는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54조에 의거 교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매각으로 추진하였으며, 위 규정에 의거 매각시 현 용도인 공장부지로 감정평가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합의 및 조정이 불가능하다.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에 의거 매각시 현 용도인 공장부지로 감정평가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해결 과정 및 내용

- 「국유재산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교환 및 양여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민원 구거의 경우 교환 및 양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토계획법 제6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정권고함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신청인의 경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혁신형자금(이노비즈)을 융자받아 공장을 증설하여 고용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에 국토계획법 제65조에 의한 무상 귀속과 무상 양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신청인들이 대체구거 설치비용 41,500,000원(계획)과 이 민원 구거 매수비용 등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해결한 사례임.

공장 등록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경북 경주시 외동읍 ○○리에 가동 중인 레미콘공장에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공장 내 구거부지에 무허가 건축물 등이 있다는 이유로 아스콘공장 허가를 해주지 않고, 건물 철거통보로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으므로, 아스콘공장에 대하여 등록 승인을 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신청인 공장 내 구거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이를 철거해야만 공장 등록을 검토해 줄 수 있다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신청인 영업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방지해 주면서 행정 목적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해법 필요

해결 과정 및 내용

- 신청인의 공장등록 요청 등의 요구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공장내 불법건축물 대하여 추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철거하고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이행강제금 납부 후 추인절차를 거쳐 건축물 준공 또는 공작물 축조신고가 이행되면 공장등록 신고를 수리하기로 하여 합의
- 다만, 구거내 불법 건축물 철거는 일정기간 까지 연기해 주기로 하고, 신청인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의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공장 등록 요청에 대하여 양성화 가능 부분에 대하여 선별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서 신청인의 영업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배려

광해방지 시설 피해 보상 요구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광해방지사설(폐광미) 관리소홀로 공장신축을 못하게 되어 기업체가 도산 위기에 있으니, 폐광미가 매립된 토지를 매입해 주든지 공장을 신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

피신청인 의견

- 광해방지사설 관리를 위해 토지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할 의무는 없다.
- 2001년 국비 29억원을 들여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후 2007년 신설된 한국○○관리공단으로 관련업무와 서류일체를 이관하여 2012년 발생한 신청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없다.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토지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당사자 간 문제로서, 한국○○관리공단과 △△군의 관리소홀 및 소관 법령 적용 및 사업의 우선순위 당위성 파악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에 대하여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한국○○관리공단은 폐광미 보존상태를 시추 및 탐사를 통해 점검하여 지내력 등의 문제가 없을 시 건축허가를 위한 기술지원을 이행하고, △△군은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 해결

-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훼손된 광해방지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신규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하며, 건축허가를 위해 현 지표면으로부터 지상 1m 성토 이행

-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해 폐광미의 보존상태를 시추 및 탐사를 통해 점검하고, 지적현황 측량으로 광물찌꺼기저장시설의 경계확정을 하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협의가 있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검토를 지원하고, 광해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토지관련 공부상에 공시토록 제도 개선 지원하고,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승인

시사점 및 기대효과

- 향후 전국적으로 폐광미 매립 여부 확인 가능하여 공장 설립 부지 선정시 판단 착오를 방지토록 하는 등 광해방지 시설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됨

상가 앞 설치 울타리 출입문 설치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항 연안에서 선박에 사용되는 어구, 공구 등을 파는 철물점 및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2015. 8. 15.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과 신청인들 상가 사이에 길이 600m, 높이 1.7m의 철제 그물 펜스를 설치하여, 신청인의 상가 이용자들이 먼 길을 돌아오게 되어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신청인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펜스 주변에 정상적인 개방 출입구가 3개나 있으며, 펜스 주변에 쓰레기 투기 등 위반 사례가 빈번하여 일부 훼손된 펜스를 보수한 것이며, 신청인 등 이해 관계자는 정상적인 출입구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행정관청의 정당한 사실행위와 이로 인하여 주변 영세 상인이 생업에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에 대하여 2015. 9. 1. 신속히 현장을 찾아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민원이며, 피신청인이 설치한 펜스에 적절한 장소에 출입구가 없을시 펜스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거리마다 출입구를 설치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동의하여 신청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 4군데를 피신청인이 출입구로 만들어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시사점 및 기대효과

- 행정관청의 행정재산 보전을 위한 경계 설치 행위와 주변 영세 상인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에 대하여 공통점을 찾아 해결

어획증명서 발급 지연 개선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국내산 수산물 수출을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어획증명서를 너무 늦게 발급하여 수출업무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니, 신청인과 같은 중소기업인들이 수출업무에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 의견

- 피신청인은 수출어획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2014. 5. 23.부터 어선 항적기록, 입어허가사항, 조업일지확인 등의 절차를 강화하여 증명서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피신청인은 조업절차 확인이 까다로운 「원양산 증명서」가 다수 접수되어 있어 비교적 쉽게 처리될 수 있는 「연·근해산 증명서」 처리도 같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다.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증명서발급은 기본적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발급 목적에 부합하나, 피신청기관에 전담직원이 1인만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양산 증명서」 발급건이 다수 접수되어 있어 모든 증명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었다.

해결 과정 및 내용

- 우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단순히 순서대로 발급 처리하는 방식에서 「원양산 증명서」와 「연·근해산 증명서」를 구분하여 발급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토록 방안을 제시하여 합의 해결되었다.

시사점 및 기대효과

-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게 신속히 증명서가 발급 처리되도록 함으로서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VI. 주택 · 건축 분야 📌

1. 건축허가서 미교부 이의
2. 건축법상 접도(接道) 요건 충족 건축허가 불허 이의
3.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 요청

건축허가서 미교부 이의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광역시 ◇◇구 ○○동 소재 9필지 토지에 지하2층/지상7층 규모의 문화·집회시설(영화관)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제출한 공사피해 민원에 대하여 신청인이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법적 근거없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받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건축계획은 건축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나 건축부지가 상시 교통혼잡 구간의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가 예상되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
- 건축허가시 교통체증 및 주차난 등을 우려하는 전화민원이 빈번하게 제기 되었고, 신청인이 인근 교회와 건물 균열 등 피해에 대비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한 바 있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의 사전 양해를 구하여 주민 등과 협의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협약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보완처분을 한 사실은 없음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건축법」 등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건축허가를 민원 발생을 이유로 취소 또는 반려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11조(건축허가) 제1항

및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제1항 등

-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 구청장이 구(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처리(건축과-25373)

해결 과정 및 내용

- 민원 접수 즉시 건축규모,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
 - 신청인이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법령에 부합되게 건축계획을 보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 확인
 - 피신청인이 교통체증, 소음, 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우려하여 주민협약서 제출을 권유한 후 공공복리 증진 등을 내세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던 사정 확인
-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법령 아닌 내부지침에 의한 건축규제는 위법 부당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시정 필요 판단
- 피신청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법령상 근거없이 내린 내부 건축위원회 심의 규정(지침)을 폐지(삭제)하라고 제도개선 권고

시사점 및 기대효과

- 발생하지 않은 민원을 우려하여 건축법령상 근거없이 내부 지침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위법 부당
- 위법부당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신속·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여 건설사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민원 발생 원인 해소

건축법상 접도(接道) 요건 충족 건축허가 불허 이의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 ○○시 소재 토지에 종계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진입통행로 폭이 4미터에 미달된다며 건축허가를 보류하여 민원 제기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토지 북측 진입로 일부 구간 폭이 4m에 미달되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마을 주민들의 종계장 시설 반대 집회 시위를 감안하여 종계장 건축허가를 보류한 상태임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건축부지 진출입로가 「건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해결 과정 및 내용

- 사실관계 조사 실시
 - 신청인은 계속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육지로부터 제주도로의 가금산물 반입이 제한되어 휴업상황 등 어려운 상황이었고, 2년 동안 부지선정,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을 받아 이상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됨
 - 미달된 도로 구간 토지는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절차 지연 등으로 사용 승낙을 받기 어려운 상황
- 민원 해소 방안 협의
 - 건축허가를 위하여 대체 진입로 마련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협의
- 민원 해소
 - 재검토한 건축부지 남측 우회 길 일부 구간 토지 소유주의 사용동의 득함
 - 비포장 진입로 일부구간을 포함하여 도로포장 완료후 건축허가 처리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건축허가 제약 사유 없이 민원을 우려한 처분 유예의 소극 행정 개선
-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여 건축허가가 어려운 경우라도 기관간 협력적 논의를 통해 민원 해소 대안을 마련한 점은 유의미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이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추가대출을 받지 못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신청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 의견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 등기사항의 소유자변경에 따라 정정이 가능하므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변동 자료 없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는 것은 불가능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건축물대장이 소유권의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실제로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 건축물은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소유권 변동에 관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급내역, 여신품의서 등에 따르면, 실제 건축주가 주식회사 OOOOO인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건축물대장은 행정청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건축물 소유권의 공시방법은 아니고(수원지법 1996.6.18. 선고 96카합3461),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대법 2002.4.26. 선고 2000다16350)고 판시
- 신청인이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허가절차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민원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신청인 “OOO”에서 신청인이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OOOOO”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실제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로 기재하도록 한 사례

Ⅶ. 도시·수자원 분야

1. 택지개발로 단절된 진출입로 및 우수관로 연결 요구
2.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요구 등
3.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검토 요구
4. 공사비 부담환수 등 이의
5. 택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설계변경 요청
6.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강제 임대료 추가 요구

택지개발로 단절된 진출입로 및 오수관로 연결 요구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신청인이 운영중인 ○○CC 후문 진출입로가 경관녹지에 가로막혀 단절되고, 관리동이 이전되었으나 오수관로를 외부로 연결하는 데 애로가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한국○○○○공사
 - 이 민원 진출입로를 개설 예정인 도시계획도로와 8m로 확폭(신청인 요구)하기 위한 공사, 행정절차 등은 신청인이 추진해야 하며, 신청인이 원하는 곳으로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
- ●●시장
 - 이 민원 진출입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없이 완충녹지 안에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시 관리동 오수관로 계획이 포함될 경우 시설 인수 가능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행정계획 변경 가능 여부, 행정절차 추진 및 비용 부담 주체
- 물리적으로 오수관로 외부 연결 가능 여부

해결 과정 및 내용

- 민원 해결을 위한 중재안 제시, 현장조정·합의('15. 4. 17.)
- 조정·합의 주요 내용
 - 한국○○○○공사
 - 기존 6m 폭으로 진입로를 확보하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외부 오수관로에 관리동 오수관로를 연결하도록 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
 - ●●시장 : 실시계획 변경에 동의하고 관련 행정절차 추진에 협조
 - 신청인 : LH 시행 관리동 오수관로 연결비용 부담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공익사업 시행자는 수용 당사자의 입장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진출입로, 오수관로 고충이 해결된 업체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요구 등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시 ○○구역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 이행을 위해 개설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소2-359호선이 (주)●●레미콘 ◇◇공장 진출입로와 연결되어 있어 공장 진출입 차량과 일반차량간 안전사고가 예상되니 이 민원 도로 선형을 변경해주든지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도로가 개통될 시 안전사고 문제는 사업시행자와 경찰청 협의 등을 거쳐 안전시설 보강, 진입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할 계획임.
- 이 민원 도로 선형 변경에 대해서는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세밀한 검토 후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설명할 계획임.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이 민원 도로 주변에 전철역사가 있어 선형 변경이 어려운 점
- 이 민원 도로 행정절차 진행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선형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점.

해결 과정 및 내용

- 실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아래 내용으로 조치하기로 합의·중재 ('16. 2. 29.)
 - 2016. 3. 18. : 안전시설물 구조계산 및 민원인과 협의 완료
 - ※ 주민설명회: 현 상황 및 현지 여건을 반영 필요시 시행
 - 2016. 3. 20.~ 3. 31. :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 ※ 2016. 3월중 ○○지방경찰청 규제심의 내용 반영 시행

시사점 및 기대효과

- 물류 이동이 중요한 기업의 교통안전문제 해결을 통한 원활한 영업 활동 지원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검토 요구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국가○○클러스터지원센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특수법인)에서 발주한 「국가○○클러스터 6대 기업지원시설 건립 건축공사」의 도급업체로서 부지 조성공사 지연 등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신청인 업체 측의 정당한 공사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있고, 파일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였음에도 검토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피신청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신청인의 공사기간을 연장할 예정이고, 신청인이 요청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유권해석 등을 통해 설계변경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신청인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피신청인 조치(미승인)의 정당성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 해결을 위해 피신청인과 협의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이 요청한 설계 변경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유권해석 등을 통해 적법한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시공업체의 정당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지체상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적정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부실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건설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에 기여

공사비 부당환수 등 이의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대 주변 견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 공사」의 시공업체(대표)로서 출납채움 공종 및 폐기물 소운반 공종에 대해 설계변경 과정을 통하여 정당하게 공사비를 증액하였음에도 감독기관(○○시)의 감사결과를 이유로 공사비를 환수하고 신청인의 타 공사현장(㉠㉠ 발주)에서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를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관계기관) 의견

- 신청인은 사괴석 포장을 설계도면 및 시방서 대로 시공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상태이므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시공사진상 24톤 덤프트럭으로 중간집하장을 이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바로 반출한 것이 확인되었기에 소운반¹⁾ 비목을 별도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실제 시공하지도 않은 것을 시공한 것처럼 하여 증액한 공사비는 부당 이득금에 해당되므로 환수하여야 함

1) 공사를 위하여 소재를 운반할 때 화물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지점까지 수송된 소재를 시공 현장의 최종지점까지 인력 또는 소규모 동력기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을 주 운반수단과 구분하여 소운반이라고 함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줄눈채움 공종은 당초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되어 공사비 증액은 부당하고, 폐기물이 소운반 공종 없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직접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감독기관 감사결과에 따라 피신청기관에서 조치한 공사비 환수에 대한 정당성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 공종이 당초(설계변경 이전) 단가산출서 등의 공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신청인의 공사비 반영 요구를 인정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처리 된 점, 공사 진행사진 등의 증빙자료 등으로 보아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신청인의 다른 채권을 압류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 공사비 환수조치 및 채권압류를 해제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정당한 설계변경 검토를 거쳐 적정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부실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건설기업의 원활한 영업 활동에 기여

택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설계변경 요청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의 철거공사(하도급)를 하면서 철거대상 건축물들의 실제 내부구조 유형(예 :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등)이 설계 구조와 달라 피신청인에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피신청인(발주처)는 설계에 반영된 건축물 내부구조 유형을 기준으로 철거공사가 완료되고 기성금이 이미 지급된 상황으로 건축물이 이미 철거된 현재시점에서 실제 내부구조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철거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은 어려우나
- 향후 진행되는 철거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의 실정보고 및 철저한 검수 등을 통해 설계변경(공사비 증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치 하겠음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신청인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피신청인 조치(미승인)의 정당성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 해결을 위한 방문조사 등 수차례의 협의 결과 피신청인은 이미 철거되고 기성금이 지급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어려우나 이후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사비 증액 등의 설계변경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함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정당한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적정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부실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건설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에 기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강제 임대료 추가 요구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충청북도 ○○시에서 발주한 ‘○○○처리시설 설치공사 (총사업비 : 52,128백만원)’에 강제를 납품(임대)하는 업체로 설계오류 등으로 강제시설 사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시공업체 및 발주처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시정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강제사용과 관련하여 2016년 9월까지의 임대료는 하도급사에서 부담하고,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임대료는 설계변경에 반영되는 경우 원도급사에서 부담할 계획이며 향후 발생하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원도급사에서 2016년 12월까지 임대자재 구입 또는 자재비 대납을 결정할 예정이고,
- 피신청인(발주처)은 원도급사에서 공사비(강제 임대비용 등)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변경 가능여부를 설계변경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하겠다.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공사현장에서의 강제 등 자재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 대상 해당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 해결을 위해 위원회 주관으로 발주기관, 시공업체 및 감리 등의 공사관계자 회의를 거쳐 신청인이 요청한 강제 임대료 증액 요구에 대해 시공업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발주처는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검토하기로 함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정당한 설계변경 검토 등을 거쳐 추가 소요되는 공사자재 임대료 등을 적정하게 지급함으로써 자재 납품 소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에 기여하고 부실공사 및 체불임금 방지

Ⅷ. 교통·도로 분야

1. 좌회전 허용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구
2.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개설 요구
3. 레미콘공장 진출입로 개설 요구

좌회전 허용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구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 ㉠㉠시 ㉡㉡읍 ●●길 주변 '●●~◇◇' 도로확장공사 설계에는 마을과 공장단지로 진입하는 좌회전이 단절되어 대형컨테이너 등이 진입할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니 좌회전 허용과 횡단보도 등을 설치 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지역은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교차로에서 약800m 이격된 ◇◇교차로에서 유턴 하도록 설계한 것이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 총사업비 반영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국도 4차선 확장을 위해 중앙선을 연결할 경우 40피트 대형차량이 화물을 가득 싣고 교차로에서 유턴할 경우 차량 전복 등 교통사고 위험
 - 수출용 자재를 운반할 대형컨테이너 등이 공장 진출입이 어려울 경우 해외 수출이 어려워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필요성 제기(이전비 약 300억 소요)

- 건널목 등이 단절될 경우 공장노동자의 보행동선 단절로 교통사고 위험

※ 무단횡단으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사망자 2명 발생

해결 과정 및 내용

- 2016. 4. 1. 집단 고충민원 접수(마을주민 576명)
- 2016. 4. 6. ~ 설명자료 요청(6회)
 - △△지방국토청, ○○교통공단, ㉠㉠서부경찰서, ○○도, ㉠㉠시
- '16. 4. 27.~ 현지조사(3회) 및 관계기관 등과 20여차례 업무 협의
 - ※ '16. 7. 8 현장조정 조정안 확정
- ○○교통공단에 기술분석 의뢰하여 3지교차로를 통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조정안을 도출하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해결
 - ▶ 노동자 및 주민들의 안전 위해 3지교차로 형성하고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 ▶ 공장단지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좌회전 대기차선 및 신호 교차로 설치
 - ▶ 소요예산(약23억)은 총사업비 반영을 위해 기재부와 적극 협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관계기관은 원론적 논리를 주장하며 설계변경에 부정적이었으나, 20여 차례의 관계기관 협의와 교통안전 기술분석을 통해, 주민 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는 점, 좌회전이 안될 경우 기업경영이 어려워 공장을 해외로 이전을 검토해야 하는 점(이전비는 약300억

소요) 등을 고려, 3지교차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

- 공장단지에서 진출입이 편리 해 세계 25개국으로 적기 수출 가능
- 공장노동자와 주민의 보행자도로 및 신호등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개설 요구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버섯재배사를 건축하여 마을기업인 ○○농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온저장고 등을 증축하여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나, 「건축법」상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니 철도부지와 국유재산(농림식품부 소관 도로와 구거)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거나 대체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

피신청인 의견

- 한국○○시설공단은 양산고가 밑 현황도로는 교량구조물의 안전과 국유재산(철도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만든 도로이나, 이 도로를 피신청인1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
- ○○시장은 이 민원 토지는 폭 4.0m 이상의 도로 및 「건축법」상 도로와 접해 있지 않아 건축허가가 불가하나, 양산고가 밑 현황도로가 피신청인2의 동의하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될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시장이 현재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부지를 「건축법」상 도로 지정할 수 있는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건축법」 제2조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에 대하여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시장은 양산고가 하부도로를 「건축법」 상 도로로 지정 공고하고 유지 관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도로와 신청인 토지 사이에 위치한 같은 동 33-2 철도용지 30㎡를 신청인에게 매각하며, 신청인은 철도 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합의해결

시사점 및 기대효과

- 농촌의 수익 증대를 위해 마을주민들이 설립한 마을기업 활동 지원
- 표고버섯을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어 물향기 농산 수익 증대
- 8개월 걸친 위원회의 피신청기관 설득으로 인한 원만한 민원해결로 위원회 위상 제고
-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편지 등 만족도 제고

레미콘 공장 진출입로 개설 요구

민원 내용 및 기업의 애로사항

- 신청인은 ㉠㉠시 ㉡㉡동 1209-1 잡종지 2,956㎡ 외 10필지 (총 37,929㎡)상에서 레미콘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도시계획도로(대로1류 2호선) 일부(61㎡)를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진출입해 왔는데,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 36호선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이 민원 점용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면서 이 민원 토지로 직접 진출입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민원 공장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

피신청인 의견

- 당초 신청인은 ㉠㉠시장으로부터 이 민원 점용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민원 공장으로 진출입해 왔으나, 이 민원 공사로 ㉠㉠시장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이 민원 점용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한 것으로, 향후 이 민원 공장으로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협조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의할 예정이며, 진출입로 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

쟁점 사항 및 관련 법령

- 사업시행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권자인 ㉠㉠시와 입장이 달라 신청인이 종전의 진출입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진출입로도 개설할 수 없는 상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해결 과정 및 내용

- 이 민원 해결을 위해 조사관 주재로 민원 현장에서 관계기관 및 관련자 회의를 거쳐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진출입로 개설이 가능하고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 잠정 설계안을 도출하였고, 공사비 등 부담은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합의 도출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비 등을 부담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하도록 의견표명하였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를 수용 (2016. 11. 22.)함으로써 문제 해결

시사점 및 기대효과

- 공익사업시행으로 새로운 진출입로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을 보상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명확화
-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약 2km 정도 레미콘 운반 차량이 우회하게 되어 물류비 증가로 레미콘 공장 운영에 큰 애로가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여 기업 운영에 기여